



에너지 복지, 왜 필요한가

한창근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절약의 대상이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화되어 왔고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은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대상으로 각인되어 왔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붙어 있는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자동차 연비,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있는 동일 면적 아파트 대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비교 등은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의 제도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는 에너지원 생산 과정과 에너지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에너지 절약은 더 강한 추진력을 받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중요하나,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에

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인한 화재 및 동사자 발생을 목격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질환 및 전력난으로 인한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 구성원이 에너지 빈곤 및 에너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사회에 에너지 빈곤 및 불평등 문제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에너지 복지의 등장 배경이기도 하다.

에너지가 복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사회적 욕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욕구란 사회적 위협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 미충족된 욕구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 빈곤에 대해 공공부조가 시작되었고, 주거 빈곤에 대한 주거 복지, 교육 빈곤에 대한 교육 복지, 그리고 최근에 문화 빈곤에 대한 문화 복지가 등장한 것은 각각의 경우 사회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처로 복지가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에 제도적인 권리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욕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제도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욕구에 대한 인정 차원에서 권리 부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기본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에너지 기본권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에너지 기본권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헌법 제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기초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생존권은 국민이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의 확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최저생활보장 원칙은 에너지 기본권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의미를 에너지법 제4조 5항(“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

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에서 찾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흥미롭게도 에너지 복지의 제도적 실천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우선 최저생계비 계층 요인의 하나로 최저 광열·수도비가 있다. “최저 광열·수도비란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건·환경 유지, 취사활동, 체온 유지 비용과 일상적인 활동 및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김미곤 외, 2010, p. 152) 한국 전력에서는 저소득 가구에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가구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더욱 의미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면서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바우처 금액을 인상(2019년의 경우 1인 가구는 9만 1000원, 2인 가구는 12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5만 6500원)하였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 여름 바우처를 사용한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 및 시설 환경의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한 제

도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지난 10년간 43만 가구를 대상으로 4132억 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의 학문적·제도적 의의 및 논리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시작 단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2018년 10월부터 시작한 ‘에너지 기본권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 주제는 반갑다. 에너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에너지 이용은 기본적인 복지 욕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복지 욕구는 에너지 기본권의 핵심이다.

에너지 복지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소비에 관한 실태조사가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은 에너지 소비에 관한 보충적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 지원으로서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서는 에너지 빈곤 측정 문제도 중요하다. 에너지 빈곤에 따른 지원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복지를 주거 복지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에너지 소비 지원 제도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포럼 2019년 7월호

는 에너지 복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우선, 에너지 소비의 중요성과 기초 에너지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에너지 복지 측정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소비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전문가의 설명이 제시되었다. 또한 에너지 빈곤의 개념과 측정 방법에 관한 논의가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외국, 특히 유럽에서의 에너지 복지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설명하였다. 보건복지포럼의 글들을 통해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더욱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원한다. ■

참고문헌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신재동. (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정책보고서 2010-58).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